

# 보도자료

관계부처 합동

✍보도일시: 2019. 1. 22(화) 조간, ❖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<인터넷 2019. 1. 21(월) 12:00 이후> △총 6쪽

- 괴장 곽희경(044-202-7554), 사무관 민광제(044-202-7557)
- ❖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고장 강영수(02-2100-2660), 사무관 서병윤(02-2100-2663)
- ❖ 금융감독원 연금금융실 실장 박학순(02-3145-5180), 팀장 윤진호(02-3145-5190)

< 본 자료는 http://www.moel.go.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#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개선

- 가입자가 '운용 대상의 종류, 비중, 위험도 등을 지정'하면 매번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최적의 상품으로 운용 가능 -

### Ⅰ. 추진 배경

- □ '18년 9월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172조 원 중 약 90%는 은행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(이하 "상품")\*으로 운용 중인데,
  - \*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
  - o 가입자는 **사업자**가 제시하는 상품목록과 설명 등에 의존하여 운용 지시한 후, 이를 변경하지 않는\* 등 소극적인 투자행태를 보임
    - \* '17년도 기준 전체 가입자의 90.1%가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음
- □ 특히, 가입자가 운용상품의 만기 도래에도 불구하고 금리 비교 등 상품 변경여부에 대한 판단 및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,
  - 같은 상품으로 **단순 재예치** 되거나 **대기성 자금**으로 남게되어 퇴직연금 자산이 더 나은 상품으로 운용되지 못하게 됨
- ⇒ 가입자가 매번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퇴직연금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 할 수 있도록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**개선**을 추진 (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방안('18.7.18.) 과제 ②-1)

### Ⅱ. 개선방안

< 운용지시방법 기	H선(요약)	>
------------	--------	---

현 행	개선(안)				
방법① 운용상품 특정	선택	방법①	운용상품 특정		
_	가능	방법②	운용대상의 종류·비중·위험도 등을 지정		

# 가 현 행

- □ 가입자는 "운용상품을 특정[방법①](예: A은행 정기예금(1년))"하는 형태로 원리금보장상품의 운용을 지시
  - 만기 도래 시 가입자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으면 **동일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**하고, 해당 상품이 없으면 **대기성자금**\*으로 운용
    - \* 단기 금융상품(MVF, MMDA 등)으로 운용되거나, 현금성 자산으로 예치(콜·CD금리 등 적용)

# 나 개선

□ "운용상품을 특정[방법①]"하는 방법 외에도 가입자가 "운용대상의 종류. 비중. 위험도 등을 지정[방법②]" 하는 운용지시 형태도 가능

### ※ 금융위 법령해석('17.6.29.)

-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금 운용지시를 할 때, 특정 상품을 지정하는 방법 뿐 아니라 운용대상의 종류, 비중, 위험도 등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운용지시를 내리는 신탁 또한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"특정금전신탁"에 해당
  - \*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"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"하는 금전신탁으로, 특정금전 신탁 계약을 체결할 때 위탁자가 "운용대상의 종류·비중·위험도" 등을 자필로 적도록 할 것[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3조 제1호 및 제104조 제6호]
  - ※ 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(신탁계약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"특정금전신탁계약")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[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제29조]

- □ 다만, 위 방법은 가입자가 상품을 직접 특정하지 않고 지정 조건에 따라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 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적용 상품의 범위를 한정하고 가입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거치도록 함
- (적용상품 범위) 특정금전신탁계약 형태로 체결한 자산관리계약에 편입되는 원리금보장상품(은행 및 저축은행 예·적금 등)으로 한정
- ② (운용지시서) 사업자는 상품의 종류, 위험도 및 만기 등 "운용지시 항목을 명시"하여 가입자로부터 구체적으로 운용지시를 받고,
- 위 운용지시 방법을 "정확히 이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"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설명하고 확인(고객확인사항)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

< 운용지시방법 비교 >

	[방법①]	[방법②]						
방법	▶ 운용할 <b>상품</b> 을 특정	▶ 운용대상의 종류, 비중, 위험도 등을 지정						
운용 지시 (예)	▶A은행 정기예금(1년)	<ul> <li>▶ (운용대상 종류) 은행 예·적금</li> <li>▶ (비중) 운용비율: 40%</li> <li>▶ (위험도) AA- 이상(상품제공기관의 신용등급)</li> <li>▶ (만기) 1년 이내</li> </ul>						
운용 상품	▶ A은행 정기예금(1년), 만기 시 별도지시 없으면 자동 재예치	▶ 신용등급 AA- 이상, 만기 1년 이내 은행 예·적금 중 금리가 가장 좋은 상품으로 운용						
운용 예시	B은행 정기예금(1년) 2.0%							

※ 온라인(비대면 채널)을 통한 운용지시 변경도 가능

#### ※ 가입자 유의사항

- □ [방법2]를 택하더라도 다음의 가입자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본인 및 시장상황에 맞게 퇴직연금 자산을 적절히 운용할 필요
  - 퇴직연금 자산에 대한 운용지시 권한 및 책임은 가입자(또는 사용자) 본인에게 있음
  - ◈ [방법②]의 경우 운용지시 조건에 따른 최적 상품에 운용될 뿐, 가장 좋은 상품에 예치되는 것은 아니므로, 금리환경변화 등 경제상황을 고려한 상품종류, 위험도 변경 등을 위한 주기적 판단 및 의사결정\*이 필요
    - \* (예시) 시장경제가 불안정 할 때 상품제공기관 위험도를 상향조정(BBB→AA), 예금자보호 한도내(부보금융회사별 5천만원 이내)에서만 운용, 저금리 상황에서 상품종류를 확대(은행 예·적금→은행 및 저축은행 예·적금)하는 등
  - ◆ 가입자는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(퇴직급여법 §18)를 통해 상품, 수익률 등 본인의 운용성과를 평가할 수 있음

# Ⅲ.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

- □ (기대효과) 사업자가 보다 나은 상품을 탐색하여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이행토록 하고,
  - 가입자는 매번 운용상품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지정한 운용방법 내 최적의 상품에 운용함으로써 수익률 제고 가능
- □ (향후 계획) 고용부·금융위·금감원은 위 방안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해 "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(고용부)"의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
  - ※ 단, 전산시스템 정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각 퇴직연금사업자별 시행 시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민광제 사무관(☎044-202-755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서(예시) 참고

#### ■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서

※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운용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선택범위(금융회사, 만기기간, 상품

제공기관의 신용등급)에 따라 만기도래시마다 운용상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					
운용지시 항목					
[상품 종류]					
[상품 만기]					
[상품제공기관의 신용등급]					
[운용비율]	%				
	품 중 납입일(또는 재예치일) 기준 예 <u>금자보호 한도 내에서</u> ) 운용하고자 함				
	급보증하거나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이 아닌 _는 예금자보호 한도와 무관하게 운용				
※ 운용지시서 작성요령					
□ 은행 예·적금       □ 금리연동         □ 저축은행 예·적금       □ 이율보증         □ 우체국 예·적금       □ 발행어음         1) 정부 보증       2) 예금자 비보호 금	융상품				
[상품 만기]: 아래 만기 중 "택1"하여 ☐ 1년 이내 ☐ 2년 이내 ☐ 3년 이내					
[상품제공기관의 신용등급] : 아래 위점 ☐ AA+ 이상 ☐ AA 이상 ☐ AA- 이상	<b>험도 중 "택1"하여 기재</b> 상 □ BBB+ 이상 □ BBB 이상 □ BBB- 이상				
■ 고객 확인사항					

- ▶ "운용대상의 종류, 비중, 위험도 등을 정하는 형태의 운용지시 방법"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, 동 운용지시 방법으로의 운용지시는 본인 의사임을 확인 합니다. [운용지시서를 □ 수령함, □ 수령 거절함]
- ▶ 당사가 법규에 의한 금융회사간 상품제공 한도 초과 및 가입자간 형평성있는 상품 배분을 사유로 고객의 운용지시를 최선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, 당사의 퇴직연금 상품배분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용할 수 있고 이를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. [□동의함. □동의하지 않음]
- ▶ 당사에서는 운용상품의 만기예정일 15일 전까지 LMS(장문문자메세지) 또는 E-mail을 통하여 만기예고를 드리고 있으니 하단의 안내 수신허용여부 및 수신방법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[ロ 안내수신허용(ロLMS, ロ E-mail), ロ 안내수신거부]

#### ※ "가입자 A" 의 운용지시서 (운용예시)

# 운용지시 항목 [상품 종류] 은행 예· 적급, 저축은행 예· 적금 [상품 만기] 1년 이내 [상품제공기관의 신용등급] BBB+ 이상 [운용비율] \_40\_%

위 조건을 충족하는 상품 중 납입일(또는 재예치일) 기준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을 예금자보호 한도 내 에서 운용하고자 함

#### ※ A금융회사의 원리금보장상품 라인업(line-up)

[금리순으로 정렬]

연번	상품명	만기	금리	신용도	연번	상품명	만기	금리	신용도
1	A저축은행 정기예금	2년	2.75%	BBB	4	B저축은행 정기예금	1년	2.55%	BBB+
2	A저축은행 정기예금	1년	2.65%	BBB	5	C은행 정기예금	2년	2.40%	AA+
3	B저축은행 정기예금	2년	2.65%	BBB+	6	C은행 정기예금	1년	2.30%	AA+

### ↓ 운용지시 이행 결과

운용지시대상 적립금의 40% 해당액을 B저축은행 정기예금(1년) 2.55%에 운용

※ 위 예시는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'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'하는 형태의 운용지시서를 도식화 한 것으로, 실제 운용지시서 및 운용지시 항목 등은 퇴직 연금사업자 별로 상이합니다.